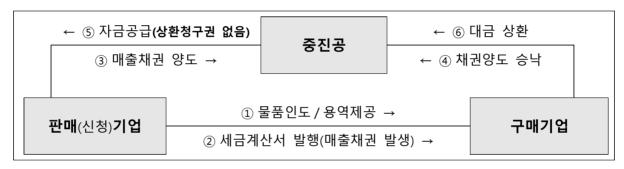
## 6-2 매출채권팩토링

- □ (대상)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,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 - \* 타 정책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
- □ (지원방식)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'상환청구권 없이'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

## 【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절차 】



- \* 판매기업 :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
- \*\* 구매기업 :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

※ 매출채권팩토링의 세부 지원대상, 조건, 방식, 절차 등은 1.9일 공고 예정